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4. 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4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0년 4월 13일
- 나. 제안자: 윤유선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2020년 4월 20일
- 라. 상정일자: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0. 4. 24.)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유선 의원)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에게 놀 권리 보장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아동, 놀 권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강서구의 아동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마. 지원계획 수립 및 조사, 연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7조)
- 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 아. 민간단체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 자. 표창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차.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 「아동복지법」 제3조

다. 협조부서: 교육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20. 4. 14. ~ 4. 19.)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제정 취지

-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법 정의
 -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 청소년기본법 : 9세~24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19세 미만
-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6조)
- 놀이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취약계층 놀이보장, 놀이문화 확산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 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해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의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한 지원계획과 사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상위법 위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다만, 조례안 제12조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시 보조금 지원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